

6 장애인고용부담금의 손금불산입 규정 보완(법법 §21(5))

종전	개정 개정
<input type="checkbox"/> 손금불산입대상 공과금 4.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것이 아닌 공과금 5. 법령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 또는 금지·제한 등의 위반에 대한 제재(制裁)로서 부과되는 공과금	<input type="checkbox"/> 손금불산입대상 공과금 조정 4. (좌 등) 5. ----- 위반을 이유로 -----

〈시행일〉 2025.1.1.부터 시행

서울행정법원과 서울고등법원에서 장애인고용부담금은 법령을 위반하여 부과된 것이지만 제재로서 부과하는 것은 아니라는 판결이 나옴에 따라 2024.12.31.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을 개정하여 “**제재**”라는 내용을 삭제하였다.

3. 벌금·과료·과태료

부과권자가 국가·지방자치단체(외국의 정부 포함)이고 부과근거가 법령인 벌금, 과료(통고처분에 따른 벌금 또는 과료에 상당하는 금액을 포함함), 과태료(과료와 과태금을 포함함)는 손금불산입(기타사외유출)한다.

손금불산입항목(법 위반에 대한 벌칙 성격)	손금항목
① 법인의 임원·직원이 관세법을 위반하고 지급한 벌과금 ②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<u>교통사고벌과금</u> (<u>교통법규</u> 를 위반한 것임) ③ <u>산업재해보상보험법</u> 규정에 따라 징수하는 <u>산업재해보상보험료의 가산금</u> ④ 금융회사의 <u>최저예금지급준비금</u> 부족에 대하여 <u>한국은행법</u> 규정에 따라 금융회사가 한국은행에 납부하는 과태금 ⑤ <u>국민건강보험법</u> 에 따라 징수하는 <u>연체금</u> ⑥ <u>외국 법률</u> 에 따라 국외에서 납부한 벌금	① <u>사계약상의 의무불이행</u> 으로 인하여 과하는 지체상금[<u>정부와 납품계약으로 인한 지체상금</u> 을 포함하며(이때 정부는 사계약의 주체임), 구상권 행사가 가능한 지체상금을 제외함](∵ 법을 위반한 것이 아님) ② 보세구역에 장치(보관)되어 있는 수출용 원자재가 관세법상의 장치기간 경과로 국고귀속이 확정된 자산의 가액(∵ 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며 순자산이 감소한 것임) ③ 철도화차 사용료의 미납액에 대하여 가산되는 <u>연체이자</u> * ④ <u>산업재해보상보험료의 연체금</u> * ⑤ <u>국유지사용료의 납부지연으로 인한 연체료</u> * ⑥ <u>전기요금의 납부지연으로 인한 연체가산금</u> *

* 자금부족으로 인한 연체이므로 추가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기 위해 손금인정한다.

4. 공과금

구분	내용
원칙	공과금은 법령에 의해 강제적 으로 부과되고, 법인의 순자산의 감소를 수반하므로 손금으로 함 예 <u>교통유발부담금</u> · <u>폐기물처리부담금</u> · <u>국민연금사용자 부담금</u> · <u>개발부담금</u> * 등
예외	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과금은 손금불산입 ①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것이 아닌 공과금(예 임의출연금)(∵ 강제성이 없는 임의적인 부담금을 손금으로 인정하면 조세회피가 가능하므로 손금불산입) ② 법령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 또는 금지·제한 등의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공과금(예 <u>폐수매출부담금</u>)(∵ 제재목적으로 부과되는 공과금을 손금으로 인정하면 제재효과가 줄어들어 공익에 반하기 때문에 손금불산입) 위반을 이유로

* 개발부담금이란 개발사업의 시행 또는 토지이용계획 변경 등으로 인한 토지가치 상승분의 일정액을 국가가 개발사업시행자나 토지소유자로부터 징수하는 공과금이다. 개발부담금은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한다(∵ 토지가치 상승분에 대해 부과되므로).